

학습능력향상 시행규정

- 제정 : 2016. 3. 9.
-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20. 3. 13.
- 개정 : 2022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학습센터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학생들 학습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자 학습능력진단을 통하여 능력별 비교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적용하고 향상도를 평가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: 2020.3.13>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“기초학습능력”이란 국어, 수학, 외국어 등의 기초 과목과 전공 학 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능력을 말한다.

제3조(담당부서) ① 비교과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교수학습센터에서 담당하 다. <개정 : 2020.3.13>

② 삭제

③ 교수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심의한다. <개정 : 2020.3.13>

④ 담당부서는 학습능력진단과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 다.

제4조(학습능력 향상범위) 학습능력 향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.

1. 학습능력진단 평가문항 개발, 선정 및 진단
2. 학습능력진단 평가 및 분석
3.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, 운영 및 평가
4.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방법 및 학습전략 설계
5. 기초학습능력 인증제 운영
6.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

제5조(기간 및 대상) ①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기간과 대상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프 로그램의 세부지침에서 정한다.

② 원칙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학생들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.

제6조(의견수렴) 담당 부서는 교수,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능력 진단 개편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지침) ① 학습능력 향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정한다.

②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성과분석,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환류, 프로그램을 개선한다.

③ 이 밖에 학습역량 향상 및 강화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